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

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

국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산재예방 서비스 전문기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기간제 근로자(휴직대체인력)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> 2024년 4월 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

《블라인드 채용 및 유의사항 안내》

- ◆ 우리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,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(예: 성별, 연령, 사진, 신체조건, 학교명, 출신지역, 종교, 혼인여부, 가족관계, 전 직장명 등)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1.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

□ 채용인원: 기간제 근로자(휴직대체인력) 총 1명

구분	수행업무	채용인원	보수	근무형태	근무기간
기간제근로자 (휴직대체)	산재예방 사업수행 및 행정지원 사무 보조	1명	78,880원/일급	전일제 (주5일, 40시간)	2024. 5. 7~ 2024. 12. 6.

[※] 보수는 세전 기본급(일급으로 계산)으로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이며, 중식보조비 등은 공단 내규에 의해 산정

□ 근무조건

- 신분: 기간제 근로자(일용직)
- 근무장소: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
 -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층
- 근무시간: 주 5일 근무, 1일 8시간(09:00 ~ 18:00)

2. 지원자격 및 수행업무

- □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('24. 4.18.(목)) 기준으로 충족여부 판단
 - 만 18세 이상이며, 정년(임용일 기준 만 60세)에 도달하지 않은 자
 - 임용예정일('24. 5. 7.) 즉시 근무 가능한자
 - 공단「인사규정」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《 공단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》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5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
- 7.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,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11.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□ 수행업무: 산재예방 사업수행 및 행정지원 사무보조

※ 세부내용: 직무설명서(덧붙임1) 참고

3. 전형절차 및 일정

연번	구분	일자	비고
1	채용공고 및 원서접수	'24. 4. 8.(월) 14:00~ 4. 18.(목) 17:00 <11일>	온라인 접수
2	서류심사	'24. 4. 22.(월)	5배수 선발
3	서류 합격자 발표 '24. 4. 23.(화)		-
4	면접심사	'24. 4. 25.(목)	1배수 선발
5	최종 합격자 발표	'24. 4. 30.(화)	-
6	임용	'24. 5. 7.(화)	-

① 원서접수

- 접수기간: '24. 4. 8.(월) 14:00 ~ 4. 18.(목) 17:00
- 제출서류: 직무능력기반지원서[닷붙임2] 및 직무수행계획서[닷붙임3]
- 접수방법: 안전보건공단 채용 사이트 내 온라인 작성·접수
 - ※ 채용사이트 주소: https://kosha.applyin.co.kr
 - ※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하며, 접수 마감시각 전까지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함

《원서접수 유의사항》

- 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·누락·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지원자격 및 우다사항 등의 경우 지원서 입력정보와 증빙서류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지원서 입력정보를 기준으로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판단하므로 정보입력 시 유의
- 본인 확인, 채용조건, 우대시항, 원서접수서류 기재시항 등의 시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당일 면접시작 전까지 별도로 제출받아 시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임
 - 모든 증빙서류는 지원자격 요건 충족여부 등의 확인 용도로만 활용되며, 편견요소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등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-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*을 작성할 수 없으며,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- * (예시)성별, 연령, 사진, 신체조건, 학교명, 출신지역, 종교, 혼인여부, 가족관계, 전직장명 등
- 제출 후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불기하므로 기재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검토 후 최종 제출

[2] **서류전형**

- 심사항목: 지원동기(25%), 직무수행능력(25%), 조직이해능력(25%), 자기개발 능력(25%)
- 심사방법: 직무능력기반지원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심사
 - 평가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(채용예정인원의 5배수)
- 합격안내: '24. 4. 23.(화) 예정, 공단 채용사이트에 게시

③ **면접전형**

- 심사일정 및 장소: '24. 4. 25.(목) / 공단 경기지역본부 예정
- 심사항목: 직무관련 지식·경험(25%), 정신자세(25%), 화합·소통능력(25%), 공직윤리(25%)
- 심사방법: 증빙서류 제출·확인 후 개별 면접심사
 - 평가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면접전형 시 제출할 증빙서류

구분	제출서류 목록
응시자 전원	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* 원본(제시용) 및 사본(제출용) *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내 여권,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복지카드 ■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원본 <'24.4.18.이후 발급> 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<'24.4.18.이후 발급> ■ (현장작성)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해당자	■ (장애인)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■ (취업지원대상자)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

※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팩스발송을 통한 출력본도 원본으로 인정

-《면접전형 유의사항》

-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면접심사 전까지 현장에서 제출하며, 미제출 시 면접전형 참가 제한될 수 있음
- 원칙적으로 원본(사본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본)을 제출해야하며, 명시한 증빙서류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, 채용조건, 우대사항, 원서접수서류 기재사항 등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며, 편견요소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등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-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 확인 결과 기재사항과 일차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4 합격자 발표

- 발표일자 및 방법: '24. 4. 30.(화) 예정, 공단 채용사이트에 게시
- 발표내용: 최종합격 여부 및 임용구비서류 등 안내

[5] **임용**

- 임용일자: '24. 5. 7.(화) 예정
- ※ 임용서류는 임용일 당일까지 제출받아 임용 적격여부 확인 및 인사기록 근거자료로 활용

구분	제출서류 목록
공통	 ▼주민등록표 초본 원본(병적사항 포함) < '24.4.18. 이후 발급> ■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원본* < '24.4.18. 이후 발급> 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* < '24.4.18. 이후 발급> ■ 증명 사진 원본 ■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(상세) 원본 ■ 최종학력증명서 원본
해당자	■ (장애인)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* ■ (취업지원대상자)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*

*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로 기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임용서류로 대체 가능

-《임용 유의사항》-

- 합격자는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- 임용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(사본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본)을 제출해야하며, 명시한 임용서류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 임용서류 미제출 또는 임용서류 확인 결과 합격자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- 임용 후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취소

4. 우대사항 🖙 동일전형에서 기산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<u>유리한 1개만 적용</u>

적용대상 및 가점	증빙서류
< 취업지원대상자 > 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
 →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(가점 미부여)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채용으로, 각 전형별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(합격 순위 결정 시에만 영향)하며, 면접 전형동점자 발생 시에만 우선하여 선발 - 단,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1명인 경우 가점 적용 점수로 평가(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% 또는 10%) 	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
< 장애인 > ■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⇒ 면접전형 만점의 5% 가점 부여	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원본

《우대사항 적용 안내사항》

- 모든 우대사항은 관련정보를 지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면접당일 면접시작 전까지 제출해야 인정
- 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, 누락,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특히 우대 사항 등 기점부여의 경우 입사지원서 입력정보와 증빙서류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지원서 입력정보를 기준으로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판단하므로 정보입력 시 유의
- 우대사항 해당여부는 **원서접수 마감일('24. 4. 18.(목))** 기준으로 판단

5. 기타 안내사항

- 우리 공단은 공정하고 편견 없는 공개경쟁 및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따릅니다.
- 채용 후 근무지역 변경은 불가하며, 숙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채용공고 내용은 업무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,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공지하거나, 해당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.
-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절차를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한 경우
 - 제출서류 중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소정서류를 왠비하지 못한 경우
 - 본인 또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
- 부정한 방법 등으로 채용절차가 중지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·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합격한 부정합격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의 재입사가 불가능합니다.
-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.
 - ※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 완료하여야 함
- ○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며, 위반 시 법 제30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- 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등에 따른 예비합격자를 4명 이내 범위에서 선발· 운영하오니 지원서에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,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예비합격자 운영기간: 결과발표일로부터 5개월 간 유효
 - 다만, 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 통보된 자가 임용일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최종합격 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불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(주말 및 공휴일 제외)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[덧붙임4]를 작성하여 이메일(jeehyunlee@kosha.or.kr)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- 이의신청 접수 시, ①성명, ②응시번호, ③생년월일, ④연락처, ⑤자필서명 중 1개라도 누락될 경우 미접수

《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》

- 채용전형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시항 등
- 시험출제자·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-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, 정보 요구 등
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,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제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[덧붙임5]를 작성 및 이메일(jeehyunlee@kosha.or.kr) 제출을 통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 청구기간 후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됩니다.
- 우리 공단은 채용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부당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,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채용사이트 Q&A 게시판 또는 채용담당부서 (T.031-259-7273, 727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덧붙임1】

직무설명서

채용분야		채용예정인원		
세승군약	근무형태	근무지	세당에양한편	
사무보조원 (기간제 근로자, 일용직)	전일제 / 주 5일 (40시간)	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(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)	1명	

고	단	1	L	OH
ᅙ	딘	^	Г	Е

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,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,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,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,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·운영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발간·제공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,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사업,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

핵심책무	ο 산업재해예방 업무 사무보조 및 경영교육센터 민원응대 등
~	0 단답세세세이 日上 시부조조 옷 이어프라면다 단편이네 (

ᄉᇸᅬᄆ	o 산업재해예방 업무 관련 사무보조 및 민원 응대 o 기타 사무보조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
〒 贺역〒	o 기타 사무보조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

필요지식 o 고객 응대·사무·행정 업무 지식 및 기술 o 엑셀, 한글 등 컴퓨터활용 관련 지식 및 경험

필요역량 및 태도

- o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대인관계능력, 조직이해능력, 공직윤리 등
- o 근면 성실하고,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
- o 업무관련 매뉴얼 숙지 및 담당업무 활용 능력
- o 민원인 응대 및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
- o 업무수행 관련 비밀엄수 및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의식

			관련분야: 사무보조		
응		o 아래 응시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			
시 조	직무	학위	무관	증	
건	7	자격	무관	빙 서	해당없음
		경력	무관	류	
	o 아래 우대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				
우디	배사항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(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)		증 빙 :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		「장애인복	루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	서 류	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

【덧붙임2】

직무능<u>력기반지원서</u>

◆ 채용분야 : 사무보조원 (기간제 근로자, 일용직)

- ◈ 직무능력기반지원서 항목은 참고사항이며, 실제 작성은 입사지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- ◈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은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
1. 인적사항

용	응시번호		(휴대폰) <i>010-xxxx-xxxx</i>	
	한글	홍길동	연락처	(자택 또는 비상연락처) <i>012-xxx-xxxx</i>
성명	한자	<i>洪吉童</i>		(이메일) <i>123456@abc.com</i>
	영문	Hong Gil dong	주소	시/도, 구/군 (이하 미기재)

2. 채용조건 충족 여부 (해당 항목 √ 표시)

	구 분	충족여부	증빙서류
	만 18세 이상, 정년(임용일 기준 만 60세)에 도달하지 않은 자	□ 충족 □ 미충족	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 사본 1부
공통	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	□ 충족 □ 미충족	-
	공단「인사규정」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	□ 충족□ 미충족	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
3. 우대사항 해당 여부 (해당 항목 √ 표시)

구 분	해당여부	증빙서류	일련번호 (자격증번호 및 발급기관)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□ 해당 □ 비해당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	
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	□ 해당□ 비해당	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1부	

※ 해당자는 추후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

【덧붙임3】

직무수행계획서

- ◆ 채용분야 : 사무보조원 (기간제 근로자, 일용직)
- 직무수행계획서는 아래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작성은 입사지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- ◈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1 [지원동기] 안전보건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우리 공단이 귀하를 채용해야하는 이유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. (400자 이내)

 2 [직무수행능력] 지원 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. (400자 이내)

 3 [조직이해능력] 안전보건공단의 핵심업무에 대해 설명하고, 공단 직원으로서 갖춰 야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. (400자 이내)

 4 [자기개발능력] 자기개발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 새로운 것을 성취해본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. (400자 이내)

<u>이의신청서</u>

공고번호		이의전형	□ 서류전형	□ 면접	l전형		
채용분야		응시번호					
성 명		생년월일					
연 락 처		이 메일					
이의신청 내 용							
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,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.							
				년	월	일	
			신 청 인		()	서명)	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							
유 의 사 항							
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입니다. 이의신청서 작성정보(채용분야 및 응시번호,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이메일, 자필서명 등) 중 1개라도 누락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. 이의신청 내용은 사실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,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,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정보요구 등은 처리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은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							

반환청구서

공고번호		접수일자					
채용분야		응시번호					
성 명		연 락 처					
반환주소	(우편번호 □□□□□)						
반환요구 서류	1. 2. 3.						
반환방법	□ 등기우편(우편요금 착불)), 🗌 등기우 [:]	편(우편요금을 선 계좌0	체)			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합니다.							
				년	월	일	
			청 구 인		(서명)	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							
공 지 사 항							

- ·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·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·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.
- ·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